



제 432회 국회 (임시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검 토 보 고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정보보호 실태점검 실시〉

■ 최민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299호)

2026. 2.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 목 차

|                                            |   |
|--------------------------------------------|---|
| I . 제안경 위 .....                            | 1 |
|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 1 |
| III . 검토의견 .....                           | 2 |
| 1.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정보보호 실태점검 실시(안 제48조의7 신설) .. | 2 |

##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최민회의원 등 17인

나. 발 의 일 : 2025. 12. 16.

다. 회 부 일 : 2025. 12. 17.

##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과 관련된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침해사고의 원인을 분석할 수 있음.

최근 로봇청소기, IP카메라 등 국민의 일상 생활과 밀접한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이 빠른 속도로 보급되고 있지만, 해당 기기들의 정보보호 수준이나 실태에 대해서 국민이 직접 확인하기 어려워 침해사고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침해사고 발생 이후의 원인 분석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사전적으로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의 침해사고를 예방하는 데에는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침해사고의 발생의 위험이 높은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에 대한 정보보호 실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침해사고의 예방 및 국민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점검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며, 점검 결과에 따라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에 대한 개선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의 침해사고 예방, 정보보호 수준 제고 및 국민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7 신설 등).

### Ⅲ. 검토의견

#### 1.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정보보호 실태점검 실시(안 제48조의7 신설)

##### 가. 개정안 요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침해사고 발생의 위험이 높고 필요성이 인정되는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에 대하여 정보보호 실태를 점검(이하 “정보보호실태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48조의7제1항),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점검심의위원회(이하 “점검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정보보호실태점검 시 심의를 거치도록 하며(안 제48조의7제2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보보호실태점검 결과를 공표하거나(안 제48조의7제3항) 개선 권고 및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48조의7제4항), 개선권고에 따른 사후조치를 요구하고(안 제48조의7제5항), 관련 자료를 미제출·허위제출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76조제3항제12호의2).

#####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신 설> | 제48조의7(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에 관한 실태점검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침해사고 |

| 현행 | 개정안                                                                                                                                                                                                                                                                                                                                                                                                                                                                                                                           |
|----|-------------------------------------------------------------------------------------------------------------------------------------------------------------------------------------------------------------------------------------------------------------------------------------------------------------------------------------------------------------------------------------------------------------------------------------------------------------------------------------------------------------------------------|
|    | <p><u>발생의 위험이 높고 정보보호 취약점을 사전에 점검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에 대하여 정보보호 실태를 점검(이하 “정보보호실태 점검”이라 한다) 할 수 있다.</u></p> <p><u>② 제1항에 따라 정보보호실태 점검을 하고자 할 경우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점검심의위원회(이하 “점검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점검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u>1. 정보보호실태점검 대상</u></li> <li><u>2. 정보보호실태점검 기준·방법</u></li> <li><u>3. 제3항에 따른 정보보호실태 점검 공표의 범위</u></li> <li><u>4. 제4항에 따른 개선 권고의 이행 내용, 실적 및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에 대한 조치계획의 적절성</u></li> <li><u>5. 그 밖에 정보보호실태점검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u></li> </ol> |

| 현행 | 개정안                                                                                                                                                                                                                                                                                                                                                                                                                                                                             |
|----|---------------------------------------------------------------------------------------------------------------------------------------------------------------------------------------------------------------------------------------------------------------------------------------------------------------------------------------------------------------------------------------------------------------------------------------------------------------------------------|
|    | <p>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보보호실태점검을 시행한 경우, 침해사고의 예방, 국민의 사생활 보호 및 제품의 정보보호 수준 향상을 위하여 점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점검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다만, 침해사고에 악용될 우려가 있거나 사업자의 영업비밀 보호 등을 이유로 점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비공개의 필요성이 인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하여서 아니 된다.</p> <p>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행한 정보보호실태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에 대한 개선 권고</li> <li>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의 제도 개선 등 협조 요청</li> <li>3.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li> </ol> |

| 현행 | 개정안                                                                                                                                                                                                                                                                                                                                                                                                                                      |
|----|------------------------------------------------------------------------------------------------------------------------------------------------------------------------------------------------------------------------------------------------------------------------------------------------------------------------------------------------------------------------------------------------------------------------------------------|
|    | <p><u>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통신판매업자,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업자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등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을 유통·판매·설치하는 자에 대한 협조 요청</u></p> <p>4. 그 밖에 침해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p> <p>⑤ <u>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제1호에 따라 개선 권고를 받은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u></p> <p>1. <u>개선 권고에 따른 이행 내용과 실적 제출 요구</u></p> <p>2. <u>개선 권고를 이행하지 못한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에 대한 조치계획 제출 요구</u></p> |

| 현행                                             | 개정안                                                                                                |
|------------------------------------------------|----------------------------------------------------------------------------------------------------|
| 제76조(과태료) ①·② (생략)                             | 3. 개선 권고 이행 여부를 확인을 위한 점검                                                                          |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정보보호실태점검 및 조치에 관한 업무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
| 1. ~ 12. (생략)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보호실태점검의 방법·절차, 점검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개선 권고의 방식·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신설>                                           | 제76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
| 12의2. · 12의3. (생략)                             | ③ -----<br>-----<br>-----.                                                                         |
|                                                | 1. ~ 12. (현행과 같음)                                                                                  |
|                                                | 12의2. 제48조의7제5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
|                                                | 12의3. · 12의4. (현행 제12호의 2 및 제12호의3과 같음)                                                            |

| 현행                       | 개정안                              |
|--------------------------|----------------------------------|
| 13. ~ 25. (생략)<br>④ (생략) | 13. ~ 25. (현행과 같음)<br>④ (현행과 같음) |

## 다. 검토사항

-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일반 국민의 일상생활 전반에 다양한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이 광범위하게 도입되고 있으며 이들 기기가 처리하는 정보의 양과 민감도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을 매개로 한 정보 유출 사고 또한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특히, 월패드, 홈캠, 로봇청소기 등과 같이 카메라를 내장하고 영상 정보를 처리하는 기기의 경우, 정보 유출 사고가 단순한 개인정보 침해를 넘어 불법촬영물 유통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그 위험성<sup>1)</sup>이 더욱 큼.
-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45조제1항<sup>2)</sup>은 정보통신망에 연결되어 정보를 송·수신할 수 있는 기기·설비·장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기·설비·

1) 지난 9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소비자원 및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침해사고로 인한 보안 위협 우려가 있는 로봇청소기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일부 제품의 보안 취약점을 발견한 후 개선 조치를 취한 바 있음.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사용되는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및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2. 정보통신망에 연결되어 정보를 송·수신할 수 있는 기기·설비·장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기·설비·장비(이하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이라 한다)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

장비(이하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에게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및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호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또한, 같은 법 제48조의6제1항<sup>3)</sup>은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에 대한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시험결과가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및 정보의 신뢰성 확보 등에 관한 인증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정보보호인증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인증기관으로서 정보보호 인증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현재 운영 중인 정보보호인증제도를 통해서도 기기의 보안성을 평가할 수는 있으나 인증제도 자체는 사업자의 자율적인 참여를 전제로 이루어지고 있어 사실상 인증 자체가 기업에 대한 홍보 기능은 수행할 뿐 정부가 인증을 강제하거나 미인증에 대한 제재는 어려움.
- 이에,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침해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 사전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을 대상으로, 점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보호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제조·수입업자에 대한 개선 권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중개·판매업자에 대한 협조 요청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관련 침해사고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6(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에 관한 인증)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시험 결과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이 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정보보호인증을 할 수 있다.

- 따라서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과 관련된 침해 사고의 빈도와 규모가 커지는 현실을 감안할 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선제적으로 점검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등의 입법취지는 타당하며 개정의 필요성이 있음.
- 다만, 일부 조문에 대한 보완 또는 수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첫째, 안 제48조의7제7항에서 대부분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데, 법률에서 대강을 규정하는 보완이 필요해 보임.
- 안 제48조의7제2항 및 제7항은 점검심의위원회를 두어 정보보호실태점검 대상, 점검 기준·방법, 공표 범위, 개선권고 이행의 적절성 등을 심의·의결하도록 하면서, 그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
- 점검심의위원회는 점검 대상 선정 및 공표 범위 결정 등을 통해 제조·수입업자의 영업에 실질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단순 자문기구를 넘어 일정한 규제적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음.
- 헌법상 법률유보 원칙에 따르면 국민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제도의 기본적 사항은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여야 하며, 합의제 위원회의 경우에도 그 기능이 중요한 경우 위원 수, 자격, 임기 등을 법률에 명시하는 입법례가 존재함
  -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정책위원회 및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는 각각 동법 제24조, 제61조에서 그 구성에 대한 사항을 정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은 점검심의위원회의 구성 관련 사항을 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위원 구성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좌우할 수 있는 본질적 요소까지 하위법령에 포괄 위임하는 결과가 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위원 수의 범위, 구성의 기본원칙, 위원 자격 및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기본사항 등은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세부 운영사항만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방식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제품안전기본법」 제9조제1항은 안전성조사를 시행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각호에서 열거하고 있으며, 그 세부적인 방법·절차 등만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
- 둘째, 이미 안 제48조의7제2항제5호에서 그 밖에 정보보호실태점검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별도 규정에서 다시 정보보호실태점검의 방법·절차를 규정하도록 하는 것은 법체계상 적절치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중복적인 규정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의 보안수준 제고 및 국민에게 정확한 보안 정보를 제공하는 보안점검·공표 제도 도입을 위한 법안 취지에 공감하며 개정안에 동의하는 입장임.
- 행정안전부는 유사·중복되는 위원회를 하나의 위원회로 연계하여

설치·운영할 필요가 있고, 유사한 목적의 위원회 신설 내용이 포함된 다수의 동법 개정안이 발의중이므로 점검심의위원회 역시 신설 추진 위원회와의 통합·연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함.

- 국가정보원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의 제도 개선 등 협조 요청은 관계법령에 따라 각 기관이 국가정보원과 협의하여 수행해야할 사항인 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실태점검 후 발견된 취약점을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에 공유하는 내용으로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함.

|              |
|--------------|
| 문 의 처        |
| 02)6788-5228 |